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형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41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우형찬 의원(1명)  
찬성자: 박승진, 박칠성, 왕정순,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임만균,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한신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생활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지만 청소년 유해 요소가 다양화되어 현장 중심의 감시와 개선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감시단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의3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따라”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14조의3을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이란 <u>청소년 기본법</u> 제3조(정의)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 「 <u>청소년 기본법</u> 」 제3조제1항에 따른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 <u>청소년 보호법</u> 」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u>&lt;신 설&gt;</u>	6.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란 「 <u>청소년 보호법</u> 」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u>&lt;신 설&gt;</u>	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을 위하여 자치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4조의3 (생 략)

제14조의4 (현행 제14조의3과 같  
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각종 자료 확인결과 이는 **기추진 사업<sup>1)</sup>**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

1) [기추진사업] 서울시 평생교육국 202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139,000천원(시비 69,500천원)